

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4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9. 5
제출자 : 장문혁 의원외 5인

1. 주 문

- 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심사기간은 2013년 9월 10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심사계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 계획안

3. 활동기간

- 2013년 9월 10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성

- 정문섭 의원, 이만재 의원, 유인환 의원, 박종욱 의원,
장문혁 의원, 이정율 의원

5. 운영계획

일시	차수	내용	비고
2013. 9.10 (금)	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 특별위원회	1.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 계획안	